

협약서

대진대학교와 의정부율지대학교병원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진대학교 교직원의 건강증진 및 보건 향상과 상호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[목적]

본 협약은 대진대학교와 의정부율지대학교병원은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상호 발전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 [협약내용]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간의 협약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"의정부율지대학교병원"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"대진대학교"에 지원한다.
 1. 대진대학교의 교직원 및 교직원 직계 가족 의료복지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
 2. 개인 종합검진 프로그램 20% 감면
 3. 장례식장 시설사용료(접객실, 안치료) 20% 감면
 4. 우대대상 : 대진대학교의 교직원 및 교직원 직계 가족
 5. 신분확인 : 대진대학교의 교직원 및 교직원 직계 가족이 진료를 받고자 할 때는 교직원 및 교직원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증 등 증빙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②. "대진대학교"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"의정부율지대학교병원"에 지원한다.
 1. 대진대학교의 교직원 및 교직원 직계 가족들에게 종합건강검진 홍보에 적극 협조
 2. 기타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행정적 서비스 제공
- ③ 기타 양 기관이 지역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사업과 홍보활동 등에 상호 협력하고 적극 지원한다.

제3조 [비밀준수의 의무]

- ① 본 협약증서에 의하여 교환되는 개인정보 등 비밀정보 및 문서는 당사자 간에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여 외부누출을 엄격히 제한한다.
- ② 본 사업의 진행상황이나 양 당사자 간 협약 과정에서 취득 또는 인지한 정보를

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③ 본 협약과 관련하여 상호제공 받은 자료는 본 협약 업무 이외의 용도에 사용을 금한다.

제4조 [효력발생]

- ① 본 협약증서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며, 협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. 단, 1개월 전에 협약종료 결정을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.
- ② 본 협약증서의 개정은 당사자 간 서면합의로 개정할 수 있다.
- ③ 제3조에 명시한 보안에 관한 의무는 본 협약증서의 효력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.

제5조 [기타]

구체적인 협력 사항은 양 기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추진한다.

협약이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는 기명,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10월 05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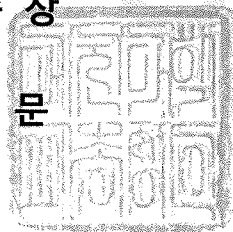


대진대학교

대진대학교 총장

총장

임영문



EMC 의정부율지대학교병원
YUJONGBU YULJI MEDICAL CENTER, YEULJI UNIVERSITY

의정부율지대학교병원

병원장

이승훈

